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64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                                           | 1  |
| III. 주요내용 .....                                          | 1  |
| IV. 검토의견 .....                                           | 3  |
| 1.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변경 권한의 지방이양 .....                   | 3  |
| 2.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 조성계획의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br>명령 권한의 지방이양 ..... | 11 |
| 3. 타당성 평가 및 타당성 평가 사업의 설계·시행·감리에 대한 중복 수<br>주 제한 .....   | 17 |

##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10. 30.

다. 회 부 일 : 2024. 10. 31.

## II. 제안이유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 '23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공·사립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및 원상복구 명령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자연휴양림, 숲길 등 사업을 실행하기 전 타당성 평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를 실행한 기관·단체에서 해당 사업(설계·시행·감리)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 문제 제기의 우려가 있음.

이에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률에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기관·단체의 해당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어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고자 함.

### Ⅲ.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 지정·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3조, 제19조)

- 자연휴양림 지정권한은 국·공·사 구분없이 산림청장에게 있었으나 산림 소유권한 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대부분에 비중을 따라 지정권한을 구분하여 운영

<지정권자>

- \* 시·도지사: 공·사립, 지정신청 면적의 50% 미만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하는 경우
- \* 산림청장: 국립, 지정신청 면적의 50% 이상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하는 공·사립자연휴양림

- 자연휴양림 해제권한을 지정권자(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권한 조정

나.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권자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6조, 제21조)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의 승인 및 취소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자율권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

다. 자연휴양림등, 숲길 조성 시 타당성 평가를 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의 설계·시행·감리 참여를 제한(안 제21조의2, 제23조)

#### IV. 검토의견

##### 1.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변경 권한의 지방이양 (안 제13조 및 제19조)

개정안은 산림청장에게 부여된 공·사유림에 대한 자연휴양림(이하 “공·사립 자연휴양림”)의 지정·지정해제 및 지정구역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되, 공·사립 자연휴양림 중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를 받은 면적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①<br>(생략)<br>② <u>산림청장은</u>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br>② <u>시·도지사는</u> -----<br>-----<br>-----<br>-----<br>-----<br>-----<br>-----<br>-----<br>-----<br>-----<br>-- <u>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현행                                                                                                                                                                                                                                                                                                                                                                                                      | 개정안                                                                                                                                                                                                                                                                                                                                                                                                |
|---------------------------------------------------------------------------------------------------------------------------------------------------------------------------------------------------------------------------------------------------------------------------------------------------------------------------------------------------------------------------------------------------------|----------------------------------------------------------------------------------------------------------------------------------------------------------------------------------------------------------------------------------------------------------------------------------------------------------------------------------------------------------------------------------------------------|
| <p>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u>&lt;후단 신설&gt;</u></p> <p>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①<u>산림청장은</u>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u>&lt;후단 신설&gt;</u></p> <p>1. ~ 3. (생략)</p> <p>②<u>산림청장은</u>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소유자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u>&lt;후단</u></p> | <p>-----</p> <p>----- . <u>이 경우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①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u> -----</p> <p>-----</p> <p>-----</p> <p>----- . <u>이 경우 시·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10분 1 이상을 변경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u> -----</p> <p>-----</p> <p>-----</p> <p>-----</p> <p>-----</p> <p>----- . <u>이 경우 시·도지사</u></p> |

| 현행          | 개정안                        |
|-------------|----------------------------|
| <u>신설</u> > | <u>는 산림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u>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정부는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고, 이를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하고,<sup>1)</sup> 지방시대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2)</sup>

- 1)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 ④ (생략)
- 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자연휴양림 사무를 202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바,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공·사립 자연휴양림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이 50% 미만 포함되는 산림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지정해제 및 지정구역변경 권한을 산림청장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및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연휴양림의 조성·운영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 및 지정구역 일부변경 권한의 지방이양】

| 관련 규정                  | 대상 사무                                                           | 권한자          |       |
|------------------------|-----------------------------------------------------------------|--------------|-------|
|                        |                                                                 | (현행)         | (개정안) |
| 자연휴양림 지정<br>(안 제13조)   | □ 공유림·사유림에 조성되는 자연휴양림 지정                                        | 산림청장 → 시·도지사 |       |
|                        | □ 자연휴양림 지정신청 면적 중 국유림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지정                        |              |       |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br>(안 제19조) | □ 공유림·사유림 및 국유림 비율 50% 미만인 산림에 조성되는 자연휴양림 지정 해제 또는 지정된 구역 일부 변경 |              |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13조제2항 단서는 자연휴양림 지정신청 면적 중 국유림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를 산림청장 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법 체계상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공·사립 자연휴양림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8월말 기준 총 156개소이고, 이 중 국유림의 대부분을 받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곳은 26개소(16.7%)인바, 구체적으로 국유림 비율이 50% 이상인 곳은 16개소(10.3%), 국유림 비율이 50% 미만인 곳은 10개소(6.4%)임.

【2024.8월말 기준 공·사립 자연휴양림 지정현황】

| 시·도         | 지정현황  | 국유림 비율<br>(50%이상)               | 시·도 | 지정현황 | 국유림 비율<br>(50%이상)      |
|-------------|-------|---------------------------------|-----|------|------------------------|
| 합계<br>(14개) | 156개소 | 16개소                            | -   | -    | -                      |
| 서울          | 1개소   | 1개소(99%)                        | 충북  | 20개소 | -                      |
| 대구          | 3개소   | -                               | 충남  | 17개소 | 3개소<br>(95%, 93%, 64%) |
| 인천          | 2개소   | -                               | 전북  | 15개소 | 2개소(73%, 72%)          |
| 대전          | 3개소   | 1개소(98%)                        | 전남  | 15개소 | 1개소(92%)               |
| 울산          | 1개소   | -                               | 경북  | 24개소 | -                      |
| 경기          | 14개소  | 2개소(76%, 69%)                   | 경남  | 23개소 | 1개소(82%)               |
| 강원          | 16개소  | 4개소<br>(100%: 2개소,<br>94%: 2개소) | 제주  | 2개소  | 1개소(100%)              |

자료：산림청

이처럼 국유림 면적 비율이 50% 이상인 자연휴양림이 상당수 있는 현황을 감안할 때, 산림청은 공·사립 자연휴양림 중 국유림 면적이 50% 이상 포함되는 경우 소유권자인 국가의 관리·감독 차원에서 개정안과 같이 현행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하지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sup>3)</sup> 및 제26조<sup>4)</sup>

에 따라 자연휴양림 용도의 국유림 대부등에 관한 권한 및 취소 권한은 모두 산림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국유림의 대부등을 허용 또는 취소 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사립 자연휴양림 중 국유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현행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미흡해 보이고, 지방이양사무 관련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아 보임.

둘째, 시·도지사의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 또는 지정구역의 일부 변경에 관한 사무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의 산림청장과의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안 제13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후단에서는 자연휴양림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지정 구역의 10분의 1 이상 변경 시 시·도지사가 산림청

---

3)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3.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4) 제26조(대부등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등을 받은 때

2.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제22조제1항·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6. 착오로 인하여 대부등을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제실무상 ‘협의’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거나, 인허가 등 의제 시 규제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사후관리의 부실화 초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두는 보완장치임.

따라서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무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지 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대한 산림청장과 협의 의무 부과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게 된다면 협의 사항 및 협의 기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들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안 제19조제1항 중 “10분 1 이상”은 “10분의 1 이상”의 오키이므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19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는 개정안에 따라 제1항이 전단·후단으로 구성되는 점을 반영하여 “제1항 전단에 따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2.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 조성계획의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권한의 지방이양(안 제16조 및 제21조)

개정안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의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시 산림청장의 원상복구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② (생략)                                                                                                              |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u>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lt;후단 신설&gt;</u> | ③ <u>시·도지사</u> -----<br>-----<br>-----<br>----- <u>명할</u> -----<br>-----<br>-----<br>-----<br>- <u>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u> |
| ④ <u>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u>                                                                                      | ④ <u>시·도지사는</u> -----<br>-----<br>-----                                                                                                                                                |

| 현행                                                                                                                                           | 개정안                                                                                                                                                                       |
|----------------------------------------------------------------------------------------------------------------------------------------------|---------------------------------------------------------------------------------------------------------------------------------------------------------------------------|
| 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 -----<br>-----.<br>-----<br>-----<br>-----.                                                                                                                               |
| 제21조(산림육장등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② (생략)                                                                                                            | 제21조(산림육장등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③ 시·도지사 -----<br>-----<br>-----<br>-----명할<br>-----<br>-----<br>-----<br>-----.<br><u>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7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u> |
|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 ④ 시·도지사는 -----<br>-----<br>-----                                                                                                                                          |

| 현행                                                                                         | 개정안                                                  |
|--------------------------------------------------------------------------------------------|------------------------------------------------------|
| 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 -----<br>-----.<br>-----<br>-----<br>-----<br>-----. |

현행법은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및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에 대하여 그 승인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반면,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비용의 회수 권한을 산림청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승인취소 권한 및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권한의 주체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취소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승인취소 권한의 주체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취지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조성계획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보조·융자비용 회수 권한의 지방이양】**

| 관련 규정                     | 대상 사무         | 권한자                    |       |
|---------------------------|---------------|------------------------|-------|
|                           |               | (현행)                   | (개정안) |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취소 등(안 제16조) | □ 원상복구 명령     | 산림청장 → 시·도지사           |       |
| 산림욕장등 조성계획 승인취소 등(안 제21조) | □ 보조·융자비용의 회수 | 산림청장 →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16조제3항 후단 및 제21조제3항 후단은 원상복구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상복구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전단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 및 산림욕장등의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한 경우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원상복구 명령에 관한 보충적 사항이 아니므로, 안 제16조 및 제21조에 제5항을 각각 신설·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등 조성에 관한 사무는 지방사무로서 시·도지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비용 회수 주체를 ‘산림청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산림청장을 삭제하고 “시·도지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법 제14조제2항5) 및 산림욕장등(법 제20조제2항6)의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이고, 개정안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권,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시 원상복구 명령 권한이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는 바, 현행법 제14조제6항 및 제20조제7항 중 산림청장이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하는 사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14조제6항 및 제20조제7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휴양림 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산림청장의 지방사무 관련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규정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지방이양사무 간 형평성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참고로 지방이양사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7)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

5)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②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②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에 안 제14조제6항 및 제20조제7항에서 “산림청장”을 삭제하게 될 경우,

안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제14조제6항 및 제20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 또는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7)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타당성 평가 및 타당성 평가 사업의 설계·시행·감리에 대한 중복 수주 제한(안 제21조의2 및 제23조)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지정,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조성계획 승인 시 타당성 평가와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설계·시행·감리에 참여를 제한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② (생략)<br><u>&lt;신설&gt;</u><br><br>③·④ (생략)          |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제2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시행·감리에 참여할 수 없다.<br>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생략)<br><u>&lt;신설&gt;</u><br><br>② (생략)<br>③ 제2항에 따라 숲길의 노선이 |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br>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시행·감리에 참여할 수 없다.<br>③ (현행 제2항과 같음)<br>④ 제3항-----     |

| 현행                                                                                                         | 개정안                                                            |
|------------------------------------------------------------------------------------------------------------|----------------------------------------------------------------|
| 지정·고시되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br>-----<br>-----<br>-----<br>-----.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숲길 조성계획의 수립, 타당성 평가의 절차, 숲길 명칭의 부여, 숲길 노선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그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 제3항-----<br>-----<br>-----<br>-----<br>-----<br>-----.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현행법 제21조의28)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제23조제1항9)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

8)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3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9)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노선선정·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숲길관리청은 효율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시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관에는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지보전협회,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문화·휴양 관련 비영리법인이 포함되고(영 제9조의6<sup>10)</sup>),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기관에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산림기술용역업자, 숲길 이용자의 활동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이 포함됨(영 제11조의4<sup>11)</sup>).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법인은 타당성 평가를 수탁할 뿐 아니라 그 수탁사업의 설계·시공·감리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타당성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타당성 평가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타당성 평가의

---

10) 제9조의6(타당성 평가의 위탁)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5.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11) 제11조의4(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종합업 또는 산림휴양 전문업 산림기술용역업자
5. 「민법」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타당성 평가의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설계·시행·감리 수주를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법 집행과정에서 하위법령 개정이나 사업시행자 선정 시 제한경쟁입찰<sup>12)</sup> 등을 통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한 기관 또는 단체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 수행을 함께 수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취지, 산림청의 수용의견, 헌법상 직업의 자유 제한 측면 등을 종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423 |

---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